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전직총회장 회합 결과보고

일시: 2023년 2월 17일(금)~19일(일) / 장소: Sheraton Hotel, Philadelphia

참석자: 전총회장 존칭 생략

조도식 (5,6,10대), 임용근 (11대), 신필영 (15대), 이오영 (19대), 김승리 (22대), 김재권 (26대)

위임: 강익조 (8대), 김영만 (21대)

회의진행: 국승구 현 대내총회장(29대), 박경덕 사무총장 배석

본회에서는 전 총회장들의 그간의 경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회 180여개를 대표(한인260만)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29대 대내총회장 국승구 총회장은 2023년 2월 17일- 19일까지 필라 공항 인근의 웨라톤 호텔에 긴급 회의소집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국회장은 준비된 순서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한 전직총회장들의 기조 발언에서 작금의 총연이 분열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발전 하는데 지난날의 총회장으로 작은 힘이나마 기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큰 의미를 두지만 금일 모임이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정관 정신에 부합해야 함이 선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미주총연 회칙 제3장 10조 8항(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장은 분과 위원회를 증설할 수 있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참석자들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토 론~

### **1. 창설목적**

일부 전직총회장의 일탈행위와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미주총연의 분쟁 내지 분규의 원인을 제공했던 과거를 부인할 수 없는 바 이를 반성하고 뜻있는 전직 총회장들이 회칙상 고문으로 현 총연합회를 지원하고 있는 방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간 실추된 전직총회장들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사심 없는 미주총연 운영에 조언과 충고 그리고 권면의 폭을 확대하고 잠정 폐쇄된 조정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함으로서 미주총연의 건전한 비전을 위한 한목소리(one voice)내는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하여 기왕의 회칙기구 상 명시되어 있는 고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보다 체계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조직명칭**

원로회의라는 명칭의 어휘 및 목적이 자칫 권위주위적 냄새가 나 미주총연 조직상의 옥상옥이 될 이미지와 개연성이 있으므로 미주총연 회칙 제3장(조직 및 기구) 10조(기구) 4항에 규정된 고문의 기능을 재 정리 확대하여 활용하자 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명칭을 '고문위원회'로 잠정(가칭) 의견을 모았다.

### **3. 위원회의 체계(고문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위원회의 구성원은 생존한 미주총연 전직총회장으로 본 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전직 총회장으로 구성하고 차후에 위원회의 조직(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조직체계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의 임기는 차후 의논하기로 하였다.

### **4. 위원회의 기능**

집행부 및 각 기구에 대한 조언과 총연 그리고 권면권을 확대 강화하고 현 회칙상 선거 관리위원장 추천권이 현직 총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고문위원회의 여과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총연이 심각한 분쟁 또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권(예: 정회원 60명이상이 공증서명한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등의 기능을 시행세칙에 명문화하기로 한다.

## 5. 설치계획

현행 회칙에 산발적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고문의 관한 사항을 정리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시행세칙을 2023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상임이사회에 부의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의결한 후 회칙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고문위원회의 시행세칙 제정은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원칙으로 한다.

## 6. 기 타

### 가)회칙 축조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신필영, 이오영 전총회장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약 3분정도의 위원을 추가 구성하여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적용 회칙 제3장 10조 8항)

### 나)미주총연 회관매각의 건

회관관리 위원장인 김승리 위원장의 경과보고를 경청하고 회관 위원이신 김풍진 변호사와 협업하고 있는 진행과정을 향후 지속적으로 경과보고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 다)정명훈 사태의 건

임기가 끝난 전임자의 일탈행위로 빚어진 불행한 사태로 규정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불가피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정상화되어 29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고 희망찬 30대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상~

#### [고문위원회 확대 창설관련 회칙조항]

제 3 장 조직 및 기구

제 10 조(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4항 고문: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직회장은 당연 직 고문이 되고 필요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아닌 인사 중 약간 명의 명예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위원은 회장에게 총연 발전을 위한 조언, 충고 그리고 권면권을 행사한다.

8항 00000...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장은 분과 위원회를 증설할 수 있다.